

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. 10. 23 선고 2024가단593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국

피고B

소송대리인 C

변론 종결2024. 9. 25.

판결 선고2024. 10. 23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8, 9항 기재 부동산 중 3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3. 11. 26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8, 9항 기재 부동산 중 3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이 사건 제1양수금 채권에 관한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의 확정

1) D은 2006. 3. 22. E 주식회사(이하 'E'라고 한다)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.

2) E는 2016. 11. 30. F 주식회사(이하 'F'이라고 한다)에게 E의 D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, 원고는 2017. 7. 7. F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(이하 '이 사건 제1양수금'이라고 한다).

3)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양수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. 11. 9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58500호로 1,053,962원과 그중 793,180원에 대하여 2017. 10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.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(이하 '이 사건 제1지급명령'이라고 한다)을 발령받아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이 2017. 11. 28. 확정되었다.

나. 이 사건 제2양수금 채권에 관한 이 사건 제2지급명령의 확정 등

1) D은 2016. 6. 3. G 주식회사(이하 'G'라고 한다)와 사이에 20,000,000원을 연이율 27.9%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2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2) H 주식회사(이하 'H'라고 한다)는 2017. 3. 13. G로부터 G의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(이하 '이 사건 제2양수금'이라고 한다), D을 상대로 이 사건 제2양수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. 10. 2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50231호로 26,940,601원과 그중 20,000,000원에 대하여 2017. 10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(이하 '이 사건 제2지급명령'이라고 한다)을 발령받아 이 사건 제2지급명령이 2017. 11. 18. 확정되었다.

3) 원고는 2018. 10. 26. H로부터 이 사건 제2양수금 채권을 양도받고 이 사건 제2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.

다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체결 및 이후 경과

1)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8, 9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(이하 합하여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하고, 개별 부동산 또는 부동산 지분을 가리키는 경우 별지 목록 번호를 붙여 '이 사건 제○부동산' 또는 '이 사건 제○부동산 지분'이라고 한다)은 D의 부친인 I의 소유였는데, I은 2023. 11. 26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(상속분 3/13), 자녀인 J, C, D, K, L(상속분 각 2/13)이 있었다.

2) 피고, J, C, D, K, L은 2023. 11. 26.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고 한다)을 하였고,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시에 따라 2024. 1. 25. 이 사건 제1, 2, 4, 5, 6, 7부동산 및 이 사건 제8, 9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(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. 1. 25. 접수 제855호) 및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(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. 1. 25. 접수 제854호)를 마쳤다. 【인정근거】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, 5 내지 7, 9 내지 1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관련법리

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4다208315 판결 등 참조).

나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원고가 D에 대한 이 사건 제1·2양수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이 사건 제1·2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었으므로,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제1·2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다. D의 무자력

1)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의 소극재산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제1양수금 채권이 '1,053,962원과 그중 793,180원에 대하여 2017. 10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.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', 이 사건 제2양수금 채권이 '26,940,601원과 그중 20,000,000원에 대하여 2017. 10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'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, D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① N조합에 1,000원, ② ○카드에 767,000원, 1,119,000원, 4,155,000원, 1,930,000원, 5,291,000원, ③ P에 1,496,000원. ④ A에 793,000원, 20,000,000원, ⑤ Q저축은행에 1,000원, R조합에 2,607,000원 합계 38,160,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의 소극재산 합계액은 이 사건 제1양수금 채권액 2,500,902원(= 1,053,962원 + 793,180원에 대한 2023. 11. 26.까지의 지연손해금 1,446,940원¹⁾), 이 사건 제2양수금 채권액 60,893,223원(= 26,940,601원 + 20,000,000원에 대한 2023. 11. 26.까지의 지연손해금 33,952,622원²⁾), N조합 등에 대한 채권액 38,160,000원의 합계액 101,554,125원이 된다.

2)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의 적극재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14호증의 기재,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,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분 가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,466,844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.

1	전남 장흥군 S면3) 이하 '전남 장흥군 S면'은 생략한다. T 토지	165	69,800	11,517,000	1,771,846
2	U 토지	279	72,700	20,283,300	3,120,507
3	T 주택	-	-	11,700,000	1,800,000
4	V 토지	72	16,500	1,188,000	182,769

1	전남 장흥군 S면3) 이하 '전남 장흥군 S면'은 생략한다. T 토지	165	69,800	11,517,000	1,771,846
5	W 토지	2,683	14,000	37,562,000	5,778,769
6	X 토지	2,466.6	13,600	33,545,760	5,160,886
7	Y 토지	9,917	605	5,999,785	923,043
8	Z 토지 중 1/3 지분	4,056.8	12,500	16,903,333	2,600,512
9	AA 토지 중 1/3 지분	179	14,000	835,333	128,512
합계	21,466,844				

3) 소결론 종합하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의 소극재산은 101,554,125원, 적극재산은 21,466,844원이므로, D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.

라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D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D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마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(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)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분 상당인 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 및 이 사건 제8, 9부동산 중 3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구세희

별지